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8. 9. 3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중 기본 대관료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주민에게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도록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안 제1호 시설사용료 가목 (10)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안 제1호
시설사용료 가목 (10)의 (다))중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
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50%** 할인 적용한다” 를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70%** 할인 적용한다” 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제12조제1항 관련] 제명 : <u>마포문화체육센터</u>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p> <p>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생략 (2) <u>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 를 할증할 수 있다.</u>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신설</p> <p>(8) 신설</p>	<p><별표> [제12조제1항 관련] 제명 : <u>마포아트센터</u>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p> <p>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현행과 같음 (2) <u>토·일·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 를 할증 적용한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u>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22시 이후의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를 적용한다. 단, 공연 종료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u> (8) <u>평일 낮 공연에 한해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0분의 20을 할인 적용한다. 단, 낮 공연은 16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별표> [제12조제1항 관련] 제명 : <u>마포아트센터</u>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p> <p>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p> <p>(8)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9) 신설	(9) 사용승인을 받은 정시 대관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은행영업일 기준)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사전 매표 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시에는 검인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 개정안과 같음
(10) 신설	(10)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 개정안과 같음
(가) 신설	(가)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 안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신설	(나)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시 기본대관료는 20% 할인 적용한다.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신설	(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50% 할인 적용한다.	(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70% 할인 적용한다.
(라) 신설	(라) 2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라) 개정안과 같음